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ETF · 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단일종목 ETF · ETN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 확대)
-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6/8/18 개정 · 2026/8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 - ‘관계기관 합동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(ETF · ETN) 보완방안 마련’(금융위 보도자료, 2026.7.16)

2) 주요 내용

- ☐ ETF · 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(제20조의4)
 - ETF · ETN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괴리율 요건을 강화(국내 2%, 해외 5%)하여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, 괴리율 계산식을 명확화
- ☐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관련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(제87조의2)
 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관련 기본예탁금 적용 시 대용증권 불인정(현금에 한하여 허용)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8/18 개정 · 2026/8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‘관계기관 합동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(ETF·ETN) 보완방안 마련’(금융위 보도자료, 2026.7.16)

2) 주요 내용

□ 단일종목 ETF·ETN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 확대(제33조)

- 단일종목 ETF 매매단위수량 20주로 확대
- 단일종목 ETN 매매단위수량 20증권으로 확대

□ ETF·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(제31조의3, 제40조, 제134조의5, 제134조의6, 제134조의7)

- 고의,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축소 및 관련 인용조문 정비
 - (기존 : 3단계) 적출 → 지정예고 → 지정
 - (개정 : 2단계) 적출 및 지정예고 → 지정
- 괴리율 계산식 구체화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
 -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계산

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·ETN 관련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화(제108조)

- 개인인 위탁자로부터 ETF·ETN의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모의거래과정(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일 종목상품 모의거래과정)의 이수하도록 의무화

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8/2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(제45조의2·제48조 제13항)

- 유상증자·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,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권리락·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

- 기존 시가총액 미달 여부는 상장시가총액(상장주식수 기준)을 기준으로 판단하나, 주식이 발행은 되었으나 추가상장되기 전 시가총액 과소 계상 우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